

1. 개정이유

한국마사회가 경주마 등록을 위한 기술적,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한국마사회법이 개정(법률 제19755호, 2023. 10. 24. 공포, 2024. 4. 25. 시행)됨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경주마 등록 취소 사유에 ① 말을 변장하여 출전시키려고 하였거나 출전시켰을 경우, ② 마주가 아닌 자가 경주마로 등록된 말을 소유하게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, ③ 말이 외부장소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휴양하였을 경우(다만, 재등록시 등록 가능), ④ 등록사항 변경 후 90일 이내 미신고 및 거짓 신고한 경우, ⑤ 경주 부적격마로 판정받은 경우를 규정(안 제9조의4제1항 신설)
- 나. 경주마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방법·절차·기한·수수료 및 경주 부적격마 판정 기준·방법·절차 등은 마사회가 정하도록 함(안 제9조의4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

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4(경주마 등록의 취소) ①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말을 변장하여 출전시키려고 하였거나 출전시켰을 경우
 2. 마주가 아닌 자가 경주마로 등록된 말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
 3. 말이 경마장이 아닌 외부장소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휴양하였을 경우, 다만 해당 말의 마주가 경주 출전을 위해 재등록을 신청하면 재등록할 수 있다.
 4. 법 제12조제2항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,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
 5. 마사회로부터 경주 부적격마로 판정을 받은 경우
- ② 경주마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방법·절차·기한 및 수수료, 경주 부적격마의 판정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은 마사회가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9조의4(경주마 등록의 취소) ①</u> <u>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“그</u> <u>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</u> <u>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”란 다</u> <u>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u> <u>는 경우를 말한다.</u> <u>1. 말을 변장하여 출전시키려고</u> <u>하였거나 출전시켰을 경우</u> <u>2. 마주가 아닌 자가 경주마로</u> <u>등록된 말을 소유하게 된 날</u> <u>부터 60일이 지난 경우</u> <u>3. 말이 경마장이 아닌 외부장</u> <u>소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휴</u> <u>양하였을 경우, 다만 해당 말</u> <u>의 마주가 경주 출전을 위해</u> <u>재등록을 신청하면 재등록할</u> <u>수 있다.</u> <u>4. 법 제12조제2항의 등록사항</u> <u>에 대한 변경신고를 그 사유</u> <u>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</u> <u>내에 하지 않거나, 거짓 또는</u> <u>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</u> <u>경우</u> <u>5. 마사회로부터 경주 부적격마</u>		

	<u>로 판정을 받은 경우</u> <u>② 경주마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방법·절차·기한 및 수수료, 경주 부적격마의 판정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은 마사회가 정한다.</u>
--	---